

더존비즈온 / +본문선택+

정관

定 款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DOUZONE BIZON CO.,LTD. 라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 2)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시스템 유지보수
- 3) 컴퓨터기기 개발 및 유지보수
- 4) 기업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사업
- 5) 에스아이(SI)사업
- 6) 경영컨설팅 사업
- 7) 전자시스템에 대한 진단 및 자문업
- 8) 에이에스피(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사업 및 웹호스팅(WEB-hosting) 운영
- 9) 인터넷 포털 사이트 운영
- 10) 인터넷 방송운영
- 11) 이 마켓플레이스(E-Market place) 운영 및 통신판매 사업
- 12) 지식, 인력 개발사업
- 13) 출판, 인쇄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 14) 학원운영업
- 15) 별정통신사업
- 16)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 17) 광고대행업
- 18) 인터넷 정보제공사업
- 19) 전자상거래
- 20) 전자금융업
- 21) 온라인 및 오프라인 금융부가통신망 서비스업
- 22)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전산 전자용품 도소매 및 알선
- 23) 평생교육법에 의거한 지식·인력 개발 및 평생교육사업
 - 가) 회계, 금융, 세무 및 경영관련 지식정보의 제공
 - 나)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
 - 다) 교수,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 라) 교육위탁사업
 - 마)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 바)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등
- 24) 교육컨텐츠 개발 및 판매업
- 25) 출판업 및 도서판매업

- 26) 교육업 및 교육프랜차이즈업
- 27) 정보처리시스템 및 네트워크
- 28) 정보처리 및 제공기술
- 29) 데이터베이스구축 제공 및 자문업
- 30) 보안솔루션 제공 및 계도활동
- 31) 인터넷정보서비스
- 32) 정보통신공사업
- 33) 도소매 및 무역업
- 34) 소프트웨어(범용성)복제업
- 35) 전자지급결제대행(PG)
- 36) 결제대금예치
- 37) 전자고지결제
- 38) 핀테크 관련 데이터분석, 개발, 판매, 유지보수 및 제공
- 39) 개인과 기업의 정보, 신용, 자본, 금융시장 데이터수집, 분석과 이를 위한 솔루션 개발 및 제공
- 40) 대출, 채권매입, 신용카드 모집업 및 중개업
- 41) 뱅사업
- 42) 정보자료처리 및 정보통신서비스업
- 43) 정보의 축적·처리·제공 및 교환·인증·전송사업과 멀티미디어서비스 등
- 44) 여론조사 및 리서치업
- 45) 광고매체판매업
- 46) 정부로부터 인가·허가 또는 위임 받았거나 정부에 신고·등록한 사업
- 47)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업
- 48) 저작권 중개알선업
- 49) 서비스를 위한 유통 채널 개발 및 확장을 포함하여 서비스 개발, 보수 유지, 지원, 향상 및 촉진과 관련된 모든 사업 활동
- 50) 인터넷을 통한 상품의 중개, 거래 및 금융거래를 영위하는 사업
- 51) 상품권의 발행, 관리 및 유통 판매업
- 52) 창업기획자 활동(창업기업 선발, 보육, 투자 등)
- 53) 직업정보제공사업
- 54) 국내/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 55)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에 대한 투자 또는 이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
- 56) 개인투자조합의 운용
- 57)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업
- 58) 건설시행
- 59) 부동산분양
- 60) 건설자재 유통 및 판매서비스업
- 61) 건물관리용역업(시설관리, 주차관리, 안내관리, 조경관리, 환경관리)
- 62) 용역경비업

- 63) 위생관리 용역업
- 64) 식품종합 소매업
- 65) 주류중개업 및 판매업
- 66) 음식점업
- 67) 자판기운영업 및 임대업
- 68) 자판기 및 동 부품 판매업과 그 관련 사업
- 69) 기타음식료품 및 일용잡화
- 70) 담배 도소매업
- 71)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 72) 위 각 호에 관련된 사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소유 및
들 회사의 지배 내지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제 3 조 (본점 및 지점소재지)

- ① 이 회사는 본점을 강원도 춘천시에 둔다.
-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국내 및 국외의 지역에 지점, 분공장, 영업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 4 조 (공고)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ouzone.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제 2 장 주 식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수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 주로 한다.

제 6 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일주의 금액은 오백 원으로 한다.

제 7 조 (주식의 종류)

-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우선주식과 보통주식으로 한다.
- ② 회사는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주식의 양도,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보통주식과 내용이 다른 우선주식을 발행 할 수 있다.

제 8 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 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9 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① 회사는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주식의 양도,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보통주식과 내용이 다른 우선주식을 발행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로 그 우선주식을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고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다.
- ③ 제1항의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이상 10%이내에서 또는 달리 이사회가 정하는 방식에 의해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 ④ 제1항의 우선주식의 발행 시에 이사회는,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그 초과 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함을 정할 수 있다.
- ⑤ 제1항의 우선주식의 발행 시에 이사회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함을 정할 수 있다.
- ⑥ 제1항의 우선주식으로서 의결권이 없는 경우, 당해 우선주식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에서 소정의 배당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⑦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⑧ 제1항의 우선주식으로서 일정한 시기의 도래에 따라 자동적으로 보통주식 또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권이 없는 우선주식으로 전환되는 전환주식의 경우에, 그 시기의 도래까지 소정의 우선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시기를 연장한다.
- ⑨ 제7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 9 조의2 (상환우선주)

- ① 회사는 제9조의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이를 주주의 상환청구에 따라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과 배당률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결정한다.
-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 다음날로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 1)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 2)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 ④ 상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일부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이 때 회사는 상환할 뜻 및 대상주식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다.

- ⑤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일부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당해 주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상환가능이익이 상환대상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상환할 수 있다.
- ⑥ 상환우선주식은 발행 시에 이사회에서 정하는 추가적인 권리와 특성을 가질 수 있다.

제 9 조의3 (전환우선주)

- ① 회사는 제9조의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로 그 우선주식을 주주의 전환청구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우선주식의 보통주식으로의 전환비율은 원칙적으로 우선주식 1주당 보통주식 1주로 한다. 단,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에 의해 보통주식의 액면가 이상의 범위 내에서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발행가액결정의 계산방식을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고,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 조정사유(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관련 사채의 발행, 주식배당 등) 등 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③ 전환주식의 전환청구기간은 발행일 다음날로부터 20년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④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단, 전환으로 발행되는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전환우선주식은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하는 추가적인 권리와 특성을 가질 수 있다.

제 9 조의4 (상환전환우선주)

- ① 회사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를 전환주식인 동시에 상환주식인 것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전환과 상환에 관한 내용은 제9조의2 제2항 내지 제6항 및 제9조의3 제2항 내지 5항을 준용한다.

제 10 조 (신주인수권)

-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3) 상법 제542조 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4)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 5)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국내·외 금융기관, 일반법인 및 개인 등의 자본참여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7)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9) 회사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국내외의 외부자문역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④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⑤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 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의2 (신주의 배당 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 년도의 직전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0 조의3 (일반공모절차)

-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 따라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발행하는 신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제9조 제2항 제5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신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일반법인 및 개인 등의 자본참여를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 ④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신주를 발행 할 수 있다.
- ⑤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할 수 있다.
- ⑥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 ⑦ 다만, 이 경우 일반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8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라, 제3자 배정증자의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라 발행가격을 산정한다.

제 10 조의4 (주식매수선택권)

- ①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 형으로 할 수 있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 및 상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1) 최대주주(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및 그 특수관계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다만, 제2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2) 주요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음.)와 그 특수관계인, 다만, 제2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 ③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일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서, 해당 주주 총회 또는 해당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행사 만료일까지 행사할 수 있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1) 회사의 경영 및 기술개발에 현격한 공헌을 한 자.
 - 2) 회사의 경영 및 기술개발에 기여할 능력을 지닌 우수 인력
- 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⑥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 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의결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의결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으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 2(신주배당 기산일)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0 조의5 (주식의 소각)

-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 11 조 (전환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상법 제51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일반법인 및 개인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4)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해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9조2(신주배당기산일)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전환사채 발행 후 전환가 조정은 할 수 있으며, 그 조정한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12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 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 제1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 우선주식, 상환우선주식, 전환우선주식, 상환전환우선주식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정하며,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상환기일 직전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그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등의 관계법규가 행사기간에 특별 한 제한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⑤ 제1항의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신주의 발행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⑥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후 행사가격 조정을 할 수 있되, 그 조정한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12 조의2 (교환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 12 조의3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 등록한다.

제 13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4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14 조 (명의개서대리인)

- ① 이 회사는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 규정에 따른다.

제 15 조 (삭제 2019.03.28)

제 16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②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주 주 총 회

제 17 조 (소집시기)

-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일 후 3월 이내,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18 조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회의 결정에 따라 대표이사(사장)이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사장)이 유고 시에는 제34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 19 조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20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근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1 조 (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으로 한다.
- ② 대표이사 사장이 유고 시에는 제34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 22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소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횟수를 제한 할 수 있다.

제 23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24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수의 10분의 1 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5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6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개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7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단, 적대적 기업인수 및 합병에 의한 이사 선임 및 해임이라고 이사회에서 결의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100분의 60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또한 동일한 사업연도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임될 수 있는 이사의 수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재적이사의 4분의 1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적대적 기업인수 및 합병에 의해 1항의 규정을 개정 또는 변경하는 것이라고 이사회에서 결의하는 경우 1항의 개정 또는 변경은 출석한 주주의 100분의 70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60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28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와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4 장 이사·이사회·감사

제 29 조 (이사와 감사의 수)

-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9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② 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2명 이내로 한다.
- ③ 적대적 기업인수 및 합병에 의해 1항의 규정을 개정 또는 변경하는 것이라고 이사회에서 결의하는 경우 1항의 개정 또는 변경은 출석한 주주의 100분의 70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60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30 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31 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 32 조 (이사 및 감사의 보선)

- ①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 29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③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3 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 ①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1인을 선임한다.
- ② 이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 34 조 (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 사장은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사장의 유고 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4 조의2 (이사의 보고의무)

-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5 조 (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 할 수 있다.
- ⑥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⑦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4조의 2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⑧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 35 조의2 (이사 및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 (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 (사외이사의 경우는 6배, 감사의 경우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②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6 조 (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 37 조 (이사회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 ③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38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의 의장은 제 37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39 조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 40 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41 조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5 장 계 산

제 42 조 (사업연도)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3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사장)은 정기주주총회 회일 6 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부분을 본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15

[정관]더존비즈온_20240304_15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4 조(이익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연도 잉여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①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 ② 기타의 법적 적립금
- ③ 배당금
- ④ 임의적립금
- ⑤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 ⑥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 45 조(이익배당)

- ① 이익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46 조 (배당금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47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나 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다.

제 2 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0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9조의 2, 제 15조, 제 27조, 제 30조, 제 31조, 제34조의 2, 제35조, 제 36조, 제39조, 제 45조의 개정 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11조 1항 3항의 개정 규정은 1997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 9조, 제 9조의3, 제 9조의4, 제 29조, 제 45조의 개정 규정은 1998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 30조의 3의 개정 규정은 199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 3 조(시행일) 제5조, 제9조, 제9조3, 제9조4, 제11조, 제12조, 제29조,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0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 4 조(시행일) 제2조, 제3조,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05월 04일부터 시행한다.

제 5 조(시행일) 제1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3, 제9조4, 제9조5,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2, 제13조, 제19조, 제22조, 제27조, 제29조, 제34조2, 제35조, 제37조, 제45조, 제47조 등의

개정 및 신설 규정은 2006년 0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 6 조(시행일)본 정관은 2007년 0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 7 조(시행일)본 정관은 2008년 0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 8 조(시행일)본 정관은 2009년 0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 9 조(시행일)본 정관은 200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 10 조(시행일)본 정관은 2011년 0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 11 조(시행일)본 정관은 2012년 0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5항, 제35조, 제35조2, 제38조, 제43조 개정내용은 2012년 0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 12 조(시행일)본 정관은 2015년 0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 13 조(시행일)본 정관은 2017년 0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 14 조(시행일)본 정관은 2018년 0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 이 정관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9년 0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2조의 3, 제14조, 제15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16조(시행일)본 정관은 2020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시행일)본 정관은 2022년 0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18조(시행일)본 정관은 2023년 0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19조(시행일)본 정관은 202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